

1. 개정이유

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 34459호)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산계약의 정산 절차 보완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제3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”을 “100분의 3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개산계약의 정산 등) ①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“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	제4조의2(개산계약의 정산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물가 변동(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3 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)	2. ----- ----- ----- 100 분의 3 미만----- ----- -----
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 절 · 제4절 · 제4절의2 · 제5절 · 제6절 · 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 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개산계약금액(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 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을 조정할 수 있다.	<삭 제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·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. 다만,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다.

<삭 제>

④ 제3항 단서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(이하 “물가변동적용대가”라 한다)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금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, 착수금·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.

<삭 제>

⑤ 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

<삭 제>

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
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
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
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
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
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.